전남대·조선대 모두 "자신 있다"

'사시 합격자 수 포함'엔 전대 "적절하다" 조대 "이해 안돼"

로스쿨(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준비해온 전남대와 조선대는 '심사 기준' 발표 후 모두 "자신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심사 기준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가 포함되자 전남대는 "적절한 기준이다"고 반겼다. 반면 조선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 기간 사시 합격자는 전남대 78명, 조선대 7명이다.

전남대는 ▲광주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서울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권역(대전·충남·충북) ▲대구권역(대구·경북) ▲부산권역(부산·울산·경남) 등 5개 권역으로 로스쿨을 배분한 것을 환영했다. 지역 안배에 따라 서울권역과 다른 4개 권역이 정원(2천 명)을 반씩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서울 권역 12개·다른 4개 권역 13개 대학에 로스쿨이 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광주권역에 2개 이상의 로스쿨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교수 확충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대 법대 송오식 부학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현명한 선택이다"면서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예상, 오는 2011년까지는 교수진(현 35명)을 46명으로 확충하고 2009년까지 로스쿨 전용관(연면적 5천500㎡·7층)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는 사시 합격자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대학 간의 전통적인 서열화를 반영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대 법대 김춘환 학장은 "수도권·국립대에 비해 사시 합격자 수가 적은 지방 사립대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같은 기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10점) 등 법조인 배출 실적 점수가 25점에 불과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대는 ▲치·의학전문대학 설립 ▲누리 사업 선정 등 대내외적으로 교육 여건을 인정받고 있다고 판단, 교육 과정(345점)·교육 시설(102)·장학 제도(55점) 등의 심사 기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로스쿨 정원을 120명으로 예상하고 교수진(현재 32명)을 37명까지 늘리고, 300억원대 장학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광주권역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서남대 등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법학대학이 없고 법학과만 있어 로스쿨을 신청하지 못한 순천대·목포대·호남대·광주대 등 광주·전남 4개 대학은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향후 진로를 모색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영역별 배점

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수	배점	배점 비율(%)
①교육목표	3	40	4.0
②입학전형	7	60	6.0
③교육과정	16	345	34.5
④교원	10	195	19.5
⑤학생	6	125	12.5
⑥교육시설	11	102	10.2
⑦재정	5	55	5.5
⑧관련 학위 과정	3	30	3.0
⑨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5	48	4.8
계	66	1,000	100

■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개요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1. 교육목표 (40점)	교육목적의 적절성(20)	법령상의 교육이념, 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의 체계성	5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법률수요 반영	5
		교육목적·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원 및 교육환경은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5
	교육목적 실현 체제 구축 (10)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체계	4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3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진체계, 발전계획, 평가시스템이 대학전체 및 (지역)사회 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3
	특성화 목표 및 전략(10)	특성화 전략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어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4
		특성화 계획과 목표가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등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3
		특성화 계획 실천 여부의 평가 및 사후 교정체계가 적절한지	3
2. 입학전형 (60점)	입학전형 계획 (합격/불합격)	입학전형 계획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	P/F
	사회적취약계층의 배려 (20)	사회적 취약계층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10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10
	비 법학사쿼터 (합격/불합격)	입학전형에 있어 비 법학사 쿼터를 1/30이상 유지 여부	P/F
	타 대학 쿼터 (합격/불합격)	입학전형에 있어 타 대학 쿼터를 1/30이상 유지 여부	P/F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 공정성 (20)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정도	20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 목표와 특성화 목표의 반영 정도 (10)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목표와 특성화 목표의 반영 정도	10
	입학전형 계획의 다양성(10)	입학전형 계획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정도	10
3. 교육과정 (345점)	교육과정의 체계성 (15)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정도	15
	전공이수 체계도 (15)	전공교과간의 체계화 정도	15
	졸업(이수학점 (합격/불합격)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90학점 이상 여부	P/F
	실무과목 (합격/불합격)	5개 과목이 실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지 여부	P/F
	필수과목지정의 적절성 (20)	필수과목이 35학점 이내로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10
		필수과목 선정의 적절성	10
	전공선택과목의 확보 (50)	전공교과 개설의 선택과목 수	20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종합적인 과목 개설 여부	10
		국내외 수요 등 참신성을 반영한 전공 교과목 개설 여부	10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 정도	10
	교육과정 운영체계 (35)	교육과정의 자율성 정도	5
		교육과정심의 기구 구성 여부	5
		교육방법개선 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10
		수업 평가계획의 합리적 정도	10
		법학사 취득자에게 15학점 이내를 인정하는 사항을 학칙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	5
	교원의 담당교과목 적합성 (60)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	50
		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	10
	수업계획서의 적절성 (30)	수업계획서 내용과 활용	10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의 공정성	5
		수업운영의 충실성	5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	10
	학사관리의 엄정성(20)	엄격하고 적정한 학사관리의 장치 마련 여부	20
	실습과정의 적절성 (30)	실습과정 협력기관수의 적절성	5
		실습과정 적절성	5
		협력기관이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가능한지 여부	10
		실습과정 계획서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10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확보 (10)	협약이 체결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실적	5
		해외 교육기관이 법률교육 및 실습과정에 적절한지	5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절성 (20)	선택과목중 특성화 교육에 30학점 이상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	5
		특성화 교과목과 특성화 교육과의 일치여부	5
		선정된 특성화 프로그램의 추진역량	5
		특성화프로그램이 학생의 졸업후 진로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5
	연구소의 자원 및 재정(15)	연구소 구성과 운영과 효율성	5
		유급 연구원 수	3
		연구소 사무전담 직원·사무조교의 총수	2
		연간 운영예산액수	5
	연구소의 실적 (20)	최근 3년간 학술행사의 개최 빈도와 규모	5
		최근 3년간 연간 연구지 발간 회수	5
		최근 3년간 연구 프로젝트 수행건수	5
		최근 3년간 연구 프로젝트 연구비 총액	5
	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 등 발간(5)	연구소의 특성화 관련 학술지 등 발간계획	5
4. 교원 (195점)	법정전임교원 수의 확보 여부 (합격/불합격)	120명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 여부	P/F
		본인가시까지 확보할 전임교원 충원계획 여부	P/F
	재학생 대비 교원 확보율 (30)	편제완성연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	30
	법조실무경력교원 확보여부 (합격/불합격)	법조실무경력 교원의 수 및 확보 여부	P/F
	다양한 실무경력교원의 확보 (20)	실무경력교원(법조·비법조 포함)의 비율	20
	교수 구성의 다양성(20)	신규채용교수 중 특정 대학출신교수의 비율 (3년간 채용계획)	10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실적 및 3년간 채용계획)	10
5. 학생 (125점)	박사학위 소지율(10)	전임교수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비율	10
	전임교원 연구실적(50)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50
	전임교원의 교육경력(20)	전임교원의 교육경력	20
	교원의 강의부담(25)	교원의 강의담당시수	25
	유급조교의 확보율(20)	전임교원대 유급조교의 비율	20
	학생지도(10)	지도교수의 매학기 일정시간 학생별 지도 실시계획	5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에 관한 각종 지원계획의 적정성	3
		학생들의 의사와 진로계획 반영 여부	2
	학생지도센터 (10)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학생지도센터 설립계획	3
		학생지도센터에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계획	3
		다양하고 적절한 지도 프로그램 정도	4
	학생복지(13)	학생들의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계획	5
		장애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접근시설 여부	4
		대학 내에 여학생 휴게실과 육아시설 제공계획	4
	학사지원부서 (12)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지원부서 운영계획	5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 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	4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	3
	장학제도(55)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장학금으로 지원받는지	30
		장학금수혜자 선발기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함과 수혜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25
	법조인 배출 실적 (25)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15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10
6. 교육시설 (102점)	독립적 교육공간의 확보(6)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3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간배치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필수시설 확보(3)	필수공통시설공간은 적정하게 확보하였는지 여부	3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 여부(합격/불합격)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P/F
	법학전문 도서관의 열람석 규모 (7)	학생정원대비 열람석의 70%이상 확보	7
	법학관련 도서확보정도(45)	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관련 도서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15
		향후 법학관련 도서의 확보계획	10
		법학 도서의 내용과 질	10
		법학관련 저널의 종수(전자저널 포함) 확보 정보	5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법학관련 도서들의 충실성	5
	법학전문사서 확보 여부(6)	전문사서의 확보(1급 사서자격증 소지)	3
		법학전문도서관의 충분한 직원 확보 여부	3
	모의법정의 규모(5)	실무교육을 위한 모의법정 공간배치의 적정성	3
		모의법정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규모가 충분한지	2
	컴퓨터 Lab(5)	학생들의 정보검색을 위한 적정한 컴퓨터 시설 공간 확보	5
	법률데이터베이스(10)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 확보 종수	5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의 다양성	5
	대형강의 공간의 확보 여부(5)	대형 강의 공간 최소한 1개 이상 확보 여부	5
	기숙사 시설(10)	전용 기숙시설(최소한 2인 1실) 확보계획	10
7. 재정 (55점)	학생지원실적의 적정성(12)	과거 3년간 학생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12
	대학전체 전임교원의 근무여건 (15)	대학전체의 근무여건의 적정성	15
	학교회계의 적정성(8)	등록금 비율(등록금/운영수입)	4
		외부자금수입 비율(외부자금수입/운영수입)	4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조달계획 (10)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여부	10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 배분계획(10)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배분계획은 적절한지 여부	10
8. 관련 학위과정 (30점)	법사학 학위과정의 폐지(합격/불합격)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P/F
	관련 학위과정 (10)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될 박사학위과정 혹은 연구 과정의 운영계획 적절성	3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교원 및 직원 확보계획	3
		학위과정생 혹은 연구과정생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 및 공간 확보	2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계획의 적절한 반영 여부	2
	「임시의 법학부」 과정 교육계획 (20)	기존 법학부생의 학업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이하 이항에서 「임시의 법학부」라 함)확보여부	5
		학부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의 적절성	5
		임시의 법학부가 폐지된 이후의 기존 학부생에 대한 학사관리 및 교양과정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의 적절성	5
		「임시의 법학부」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율	5
9.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책무성 (48점)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10)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	5
		대학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실적	5
	대학특성화 추진실적(10)	특성화분야 선정	10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도(10)	국제화 지향 목표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3
		국제화 전담조직 형태 및 근무자 수의 적정성	2
		연구의 국제화 실적	3
		교육의 국제화 실적	2
	연구윤리 확보수준(10)	연구윤리 관련 규정	5
		연구윤리 규정 적용을 위한 노력 정도	5
	교육적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수행 정도(8)	최근 3년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	4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	4

사시 합격자 수·대입 제재 실적 추가

'심사기준' 10개 항목 '합격' '불합격'제 도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 심사기준은 총점 1천 점 만점으로 지난해 시안과 동일하나 세부 영역 및 항목 배점이 약간씩 조정되고 일부 추가됐다.

심사기준은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 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학위 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 9개 영역의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 점수가 전체의 5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나온 시안에서 290점이었던 교육과정 영역 배점이 345점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125점이었던 교육시설 영역 배점은 102점으로, 100점이었던 재정 영역 배점은 55점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과도한 투자보다는 실질적인 로스쿨 교육의 질, 즉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 영역 중 법조인 배출실적(20점) 항목이 새로 추가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가 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가 10점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현황을 보면 대학별 합격자수는 ▲서울대 321명 ▲고려대 156명 ▲연세대 113명 ▲성균관대 74명 ▲이화여대 56명 ▲한양대 50명 ▲중앙대 24명 ▲전남대 19명 ▲부산대 18명 ▲경북대 16명 ▲서강대 15명 ▲건국대·경희대 각 14명 등이다. 합격자 총 1천8명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상위 5개대 출신이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 줄세우기' 논란을 우려해 사시 합격자수를 선정기준에 넣지 않으려 했으나 법학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온 현실적 성과이자 객관적인 평가지표인 사시 합격자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선정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영역은 시안에 없었다가 새로 추가됐으며, 세부평가 항목 가운데 '최근 3년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가 포함돼 주목된다. 논란이 됐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등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과 관련해 정부 제재를 받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합격·불합격'(Pass·Fail) 제도가 도입된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로스쿨법 및 시행령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 합격·불합격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한 개 항목에서라도 불합격 처리되면 로스쿨 인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해당 항목은 '입학전형계획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입학전형에서 타대학 출신 및 비법학사 출신 쿼터를 3분의 1 이상 유지하는지 여부', '20명 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법조 실무경력 교원 확보 여부',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여부',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계획 여부' 등 10개 항목이다.

이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10점), '재학생 중 장학금 수혜 비율'(30점), '장학금 수혜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25점) 등의 항목이 심사기준에 포함됐다.

/연합뉴스